

보육교사 권리 인식 척도 개발 및 타당화*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Recognition Scale for Childcare Teachers' Rights

석재경¹ 김정민²

Jaekyeong Suk¹ Jungmin Kim²

ABSTRACT

Objective: The aim of the present study was to develop and validate a recognition scale for childcare teachers' rights.

Methods: Statistical methods for data analysis involved the use of SPSS 20.0 and AMOS 20.0. To confirm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developed scale, various analyses, including item quality assessment, item discrimination, exploratory factor analysis,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nd Pearson correlation analysis, were conducted. The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method was employed for model fitting. Goodness of fit was assessed using SRMR, RMSEA and its 90% confidence interval, CFI, and TLI. Through these analyses, the scale's reliability and validity exceeded the standard. Consequently, 5 factors and 30 questions were ultimately selected as the recognition scale for childcare teachers' rights.

Results: First, a recognition scale for childcare teachers' rights was developed to reflect changes in childcare settings. Second, an objective measurement was incorporated into the recognition scale of childcare teachers' rights. Third, the analysis using the proposed scale revealed a correlation between the recognition of childcare teachers' rights and life satisfaction.

Conclusion/Implications: The study developed a scale capable of objectively measuring the recognition of childcare teachers' rights.

Key words recognition scale of childcare teacher's rights, scale development, validation

* 본 논문은 2023년 대구가톨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및 2023년 한국보육지원학회 춘계학술대회 포스터 발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1 제1저자

대구가톨릭대학교 아동학과 박사

2 교신저자

대구가톨릭대학교 아동학과 부교수
(e-mail: jungminkim@cu.ac.kr)

I. 서론

보육교사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존중받는다고 인식하는 것은 보육의 질과 영유아인권실현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윤재희 등, 2015). 보육교사가 자신의 권리에 대해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할 때, 보육교사의 사기는 저하되고 보육에 대한 불만과 무관심으로 이어져 결국 직무수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임승렬, 2007). 반면, 보육교사는 자신의 권리를 존중받는다고 인식할 때 교사로서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성공적인 직무수행, 즉 효과적인 보육을 실

행할 수 있다(임승렬, 2007). 이는 보육교사의 권리와 영유아의 권리는 상호독립적이지 않으며, 보육교사의 권리 인식이 영유아권리존중 실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손정은, 2022). 영유아의 권리와 보육교사의 권리는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보육교사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 곧 영유아권리존중 보육 실행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되나, 보육교사의 권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보육교사의 권리는 법률을 근거로 보장될 수 있는데, 사실상 현재 우리나라 법률에는 보육교사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명확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보육교사는 영유아보육법과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고 있으며, 「영유아보육법」 제2조(정의)에 따르면 보육교사는 ‘보육교직원’으로, 교육법이 정한 ‘교원’의 신분과는 차이가 있다. 또한 영유아보육법에는 보육교사의 직무, 책무, 자격, 결격사유와 같은 내용은 상세히 명시되어 있으나, 보육교사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은 찾아볼 수 없다. 이는 보육교사의 전문성과 교육권이 인정받기 어렵고 교사로서의 권리를 보장받기 힘든 상황을 시사한다. 보육교사의 성공적인 역할수행을 위해서는 보육교사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보육교사를 둘러싸고 있는 인적자원인 원장, 동료교사, 원아부모와의 협력적인 관계 및 섬세한 상호작용은 조직을 원활하게 운영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강혜경, 문혁준, 2021). 2021 전국보육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보육교사는 교직원(원장, 동료교사) 및 원아부모와의 관계에서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보육교사 10명 중 3명은 원장 및 동료교사 또는 원아부모로부터 권리를 침해당한 적이 있으며, 권리 침해의 주체는 원아부모가 71.9%로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였다(양미선 등, 2021. 12). 그러나 보육교사들이 이러한 어려움을 겪더라도 사실상 어린이집에서 부모에 대한 조치는 하기 힘들고 보육교사가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기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많은 보육교사들이 직무 수행 중 부모와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정선영, 조안나, 2019), 이는 교직원 및 원아부모와 보육교사의 관계를 교사 권리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최근 보육지원체계 개편 및 보조교사 지원 확대 등으로 보육교사의 처우 및 근로환경이 부분적으로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보육교사를 둘러싼 기본생활 환경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과반수 이상의 보육교사가 신체건강 또는 정신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 실제 근무시간에 잠시 자리를 비우거나 휴가를 내어 진료를 받기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인의 걱정 식사시간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양미선 등, 2021. 12). 따라서 보육교사가 몸이 아플 때 병원 진료를 받기 어렵고, 최소한의 식사시간을 보장받지 못하는 등 인간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보육교사의 권리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보육교사는 교사로서의 권리 중 근로환경을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이서영, 양성은, 2018). 보육교사 권리에 대한 경험적 인식 연구에 따르면 보육교사는 교사로서의 권리 중 ‘근무여건 개선 및 복지후생 요구권’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육교사의 권리 인식 연구에 따르면 보육교사의 권리 보장을 위해 보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근무환경, 원활한 연차 사용, 업무량 과다 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김미정, 임

예슬, 2019). 이는 보육교사가 자신을 둘러싼 근로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적절한 근로환경은 교사로서 반드시 보장받아야 할 권리의 일부라고 판단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최근 근로기준법이 개정됨에 따라 2018년 7월 1일부터 보육교사 휴게시간 보장 의무화가 실행되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에 의거하여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교사에게 1일 4시간 근로당 30분 이상, 8시간 근로당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어린이집에서 담임교사가 담당 영유아를 두고 자유롭게 휴게시간을 갖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교사 휴게시간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보육교사는 자유이용원칙에 근거한 휴게시간 보장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으며 과반수 이상이 서류(일지, 개인서류, 알림장 등)로 인해 휴게시간 사용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었다(이현옥, 윤혜주, 2021).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제3항에 의하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현재 보육교사가 사용하는 휴게시간은 근로의 연장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보육교사의 권리 측면에서 전반적인 보육교사의 근로환경을 포함한 휴게시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보육교사의 근로환경 보장은 보육교사 권리의 매우 중요한 요소이지만, 보육현장의 변화에 따라 보육교사의 자율적 보육 실행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19 개정 누리과정과 4차 표준보육과정 시행은 영유아 놀이의 중요성과 보육교사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변화를 가져왔다. 아동중심·놀이중심의 보육실행을 위해서는 보육교사의 자율성·융통성·다양성을 존중해야 하며(교육부, 보건복지부, 2019b), 이는 보육교사의 자율적인 보육실행에 대한 근거가 된다. 개정 누리과정에서 보육교사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학습자 중심의 배움을 실현하는 데 교사의 교육적 판단이 중요하고, 영유아의 놀이는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교사의 자율성을 기반으로 상황에 적합한 판단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교육부, 보건복지부, 2019b). 이는 보육현장에서 보육교사의 자율성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함을 의미하고, 권리적 측면에서도 보육교사의 자율성을 고려해야 함을 의미한다.

한편 2015년 9월 19일부터 시행된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는 상시적인 관찰과 감시의 대상이 될 보육교사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인 행정 명령에 따라 실시된 것으로 보육교사의 권리 침해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였다(정계숙, 최은아, 2019). CCTV 설치 의무화는 그 필요성이 인정되나 보육교사들이 소극적 보육을 실행하도록 만들며,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문제(진보네트워크센터, 2015. 2)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교사의 권리 측면에서 CCTV 관련 규정들이 준수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보육교사는 퇴근시간 이후 교사의 사생활에 대해 간섭받았던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김보현 등, 2020), 근무 시간이 끝난 후에 문자, 메신저 등을 통한 의사소통은 보육교사에게는 사생활 침해로 작용할 수 있어 그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따라서 보육교사의 권리 측면에서 신분 및 사생활 보호에 대하여 고려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보육교사는 자신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보육교사는 단순히 교육을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 관련하여 끊임없이 배우고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는 직업이다(이성혜, 김연하, 2013). 또한 모든 보육교사는 보수교육, 의무교육, 근로자법정의무교육 등의 다양한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또한 의무적인 교육 이외에 다양하고

체계적인 재교육에 지속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적용할 수 있다(한국보육진흥원, 2022. 2). 이는 보육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지원하여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요인이다. 보육교사는 보육전문가로서 자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신의 전문성 발달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를 보육교사 권리 측면에서 살펴보아야 한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보육교사의 권리는 인간의 기본생활 보장, 적절한 근로환경 보장, 의사 및 자율성 존중, 원아부모 및 교직원으로부터의 권위 존중, 신분 및 사생활 보호,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그동안 보육교사의 열악한 근무환경 및 권리 침해 상황을 알리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육교사 권리 인식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장경화, 임선아, 2022). 사회적으로 보육교사 권리 침해 사례들이 이슈화되고, 보육교사 권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관련 연구들(구은미, 정혜영, 2016; 최양미 등, 2017; 이강재, 이유미, 2020)이 이어지고 있으며, 보육교사 대상의 권리존중 척도(이강재, 이유미, 2020)가 개발된 바 있다. 그러나 보육교사 권리와 관련하여 다양한 이론적·실증적 자료를 검토한 결과, 기존의 보육교사 권리존중 척도(이강재, 이유미, 2020)에서 제시하고 있는 구성요인(보육과정 운영 자율권, 신분보장권, 근로환경권, 교사 기본권, 어린이집 운영 참여권)과 문항보다는 보육교사 권리를 더욱 전문적·구체적·포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구성요인 및 문항의 선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보육교사 권리존중 척도(이강재, 이유미, 2020)에는 보육교사를 둘러싼 인적자원과 관련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많은 보육교사들이 원장 및 동료교사 또는 원아부모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들로부터 권리를 침해당한다는 연구 결과(김연 등, 2012; 양미선 등, 2021. 12)를 볼 때 보육교사의 권리 측면에서 인적자원과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보육교사 권리존중 척도(이강재, 이유미, 2020)는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 보육교사의 권리에 대한 경험 및 인식을 포함한 척도를 개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최근 3년간 2019 개정 누리과정 시행 및 근로기준법 개정 등 보육현장의 변화가 일어나 보완이 필요하다. 연구방법 측면에서도 척도의 타당성 확보를 위하여 보육교사 권리존중 척도(이강재, 이유미, 2020)에서 사용한 요인분석 방법 및 타당성 검증 과정을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보육교사 권리존중 척도가 지닌 한계점을 보완하여 현재 보육현장과 보육교사의 지위, 역할 등을 반영한 보육교사 권리 인식 척도를 개발 및 타당화 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보육교사의 권리를 존중하기 위한 실증적 자료로써 의미있을 것이며, 보육교사 권리 실현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환경적 개선에 밑거름이 될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이상의 연구목적에 근거하여 설정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보육교사 권리 인식 척도의 구성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보육교사 권리 인식 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는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전국에 소재한 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사 총 638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현재 보육현장의 모습을 반영하기 위하여 재직 중인 어린이집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보육교사가 1년 이내의 경험만으로 답변하도록 하였다. 총 638명 중 404명의 자료는 문항양호도 검증, 문항변별도 검증, 탐색적 요인분석에 사용하였고, 234명의 자료는 확인적 요인분석, 타당도 및 신뢰도 검증에 사용하였다.

2. 연구도구

1) 삶의 만족도

본 연구에서는 보육교사의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Diener 등(1985)이 개발한 삶의 만족도 척도(SWLS:Satisfaction With Life Scale)를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삶의 만족도 척도는 총 5문항이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으로 이루어진 5점 Likert 척도이다. 총점 범위는 5~25점이며, 25점에 가까울 수록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하고, 5점에 가까울수록 삶에 대한 만족도가 낮음을 의미한다. 삶의 만족도 척도의 Cronbach's α 값은 .88으로 나타났다.

3. 연구절차

본 연구는 보육교사 권리 인식을 측정하는 척도를 개발하는 과정(문항 개발과 예비조사)과 개발한 척도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구체적인 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문항개발

보육교사 권리 인식 척도 개발을 위하여 관련 문헌 고찰과 보육교사 대상 개별면담 결과를 반영하여 척도의 구성요인을 선정하고 예비문항을 개발하였다.

(1) 문헌고찰

먼저, ‘2019 개정 누리과정 놀이실행자료집’(교육부, 보건복지부, 2019a), ‘2019 개정 누리과정 해설서’(교육부, 보건복지부, 2019b)와 ‘2022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한국보육진흥원, 2022. 2), 보육교사 권리 관련 법률(대한민국 헌법, 교육기본법, 교원지위법, 사립학교법, 근로기준법), ‘2020 보육교사 설문조사 보고서(직장갑질119 등, 2020)’, 관련 선행 연구 등의 문헌을 고찰하였다.

(2) 교사 개별 면담

실제 보육현장에서의 권리 존중 경험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현직 보육교사 9명과 개

별면담을 실시하였다. 각 연구 참여자들과 사전 연락 후 연구 참여자들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를 선정하여 진행하였으며, 시간은 40분~1시간 정도 소요되었다. 개별면담 참여자의 경력은 1년~5년 4명, 6년~10년 2명, 11년~15년 2명, 16년 이상 1명이며, 소속은 국공립어린이집 2명, 직장어린이집 2명, 민간어린이집 2명, 가정어린이집 3명으로 다양한 특성을 가진 연구 참여자가 골고루 분포되었다.

면담 질문지를 구성하기 위하여 관련 문헌을 고찰하고, 아동학과 교수 2인과 아동학과 박사과정 1인이 본 연구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함께 논의하였으며, 질문내용은 ‘어린이집에 근무하면서 보육교사로서 권리를 존중받은 경험은 무엇인가?’, ‘어린이집에 근무하면서 보육교사로서 권리를 존중받지 못했던 경험은 무엇인가?’, ‘보육교사로서 반드시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권리는 무엇인가?’, ‘보육교사의 권리와 관련하여 법과 제도적 측면에서 어떠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에 대한 교사의 답변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개별면담에 대한 교사 답변

| 질문 | 교사 답변 | |
|-------------------|----------------------|---|
| | 구분 | 구체적 내용 |
| 권리를 존중받은 경험 | 원장과 부모의 존중 | 보육방식 존중, 존댓말 사용, 전문성 인정 등 |
| | 적절한 근로환경 | 근무시간 준수, 연차 및 육아휴직 사용, 공평한 일 분배, 연구수당 지원 등 |
| | 기본생활 보장 | 병원 이용 등 |
| 권리를 존중받지 못한 경험 | 원장과 부모의 비존중 | 전문성 무시, 과도한 요구, 반말 사용 등 |
| | 열악한 근로환경 | 휴게시간 미보장, 연차 사용의 어려움, 과도한 업무, 불공평한 업무 분담, 높은 교사 대 아동 비율 등 |
| | 기본생활 보장 제한 | 식사 시간, 병원 방문, 화장실 이용 등에서 자유로움 제한 |
| | 사생활에 대한 간섭 자율성 제한 | CCTV 노출, SNS 엿탐, 연락처 공개 등 교사 의견 무시, 교수자료 미제공 등 |
|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권리 | - | 보육의 자율성, 사생활 보호, 교수준비시간, 휴게시간, 보육교사의 철학과 신념 등 |
| 법과 제도적 측면의 변화 | 보육교사 보호 | 보육교사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보육교사 권리 교육, CCTV 열람요청 거부권 등 |
| | 부모에 대한 거부권 마련 | 강제퇴소 권한, 법적 처벌기준 마련 등 |
| | 근로환경 개선 | 서류업무 간소화, 교사 대 아동비율 감소, 휴게시간 사용 보장, 보조교사 지원 확대 등 |

(3) 예비문항 선정과 내용타당도 검증

문헌고찰과 개별면담 분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질문지 작성법을 고려하여 ‘기본생활’ 7문항, ‘근로환경’ 40문항, ‘자율성’ 11문항, ‘교사권위’ 46문항, ‘신분 및 사생활’ 11문항, ‘전문성 발달’ 5개 문항, 총 6개 구성요인 120문항의 1차 예비 문항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1차 예비 문항에 대해 아동학 교수 2인이 전체 문항을 검토하였으며, 내용타당도 검증 후 의미가 모호하거나 중복되는 문항 3개를 삭제하여 117문항의 2차 예비 문항을 선정하였다.

2) 예비조사

예비조사 인원은 20~40명이 적합하다는 Nunnally와 Bernstein(1994)의 견해에 따라 현재 어린이 집에 근무 중인 보육교사 2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 질문지에는 각 문항에 대한 의견란을 두고 의견을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예비조사를 통해 18개의 문항을 수정하였고,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문항(예. 중복 문항, 내용과 맞지 않는 문항, 답변하기 힘들거나 모호한 문항) 36개는 삭제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선정된 ‘보육교사 권리 인식’ 척도의 최종 예비 문항은 ‘기본생활’ 4문항, ‘근로환경’ 25문항, ‘자율성’ 10문항, ‘교사권 위’ 28문항, ‘신분 및 사생활’ 9문항, ‘전문성 발달’ 5문항, 총 81문항이다.

3) 척도의 타당성 검증

보육교사 권리 인식 척도 예비문항에 대한 타당성 검증 과정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되었다.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에 사용될 데이터는 다른 자료를 사용해야 한다(홍세희, 2015)는 기준에 따라 최종 예비 문항에 대한 본조사를 두 차례에 나눠서 실시하였다. 먼저 1차 본조사를 통해 얻은 404명의 데이터를 토대로 문항양호도 검증, 문항변별도 검증,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후 2차 본조사를 통해 얻은 234명의 데이터를 토대로 확인적 요인분석, 공인타당도 검증, 신뢰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4. 자료분석

개발된 최종 예비문항들에 대해 SPSS 20.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문항양호도 및 문항변별도 검증과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문항양호도를 평가하기 위해 평균, 표준편차, 첨도 및 왜도, 문항-총점 간 상관계수, 문항 제거시 내적일치도를 산출하였다. 문항변별도 검증을 위해 보육교사 권리 인식 척도 총점을 기준으로 상위 30%, 하위 30%의 두 집단으로 나눈 뒤, 집단 간 평균차이에 대하여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에서는 KMO의 표준적합도(Kaiser-Meyer-Olkin)와 Bartlett의 구형성 검정통계치를 산출하여 수집된 자료가 요인분석에 적합한지 확인하였다. 이후 스크리 검사와 최대우도법 및 오블리민 사각회전을 이용하여 요인 수를 결정하고 요인에 해당하는 문항들을 결정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으로 추출된 문항에 대하여 모델 적합도를 알아보기 위해 SPSS 20.0 및 AMOS 20.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얻은 결과를 토대로 Chi-Square(χ^2), 표준화된 Chi-Square, TLI, CFI, SRMR, RMSEA를 통해 측정모델과 구조회귀모델의 부합도를 확인하였다. 또한 완성된 모델에 대하여 각 문항별 요인부하량 및 요인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공인타당도 검증을 위해 삶의 만족도 척도에 대한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여 분석을 실시하고, 최종 문항에 대한 구성신뢰도(construct reliability)를 확인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문항양호도

자료의 정규분포 검증을 위해 왜도와 첨도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왜도는 -1.36~.48로 나타났고, 첨도는 -1.25~8.42로 나타나 정규분포의 조건을 만족하였다. 문항-총점 간의 상관계수는 .28~.76으로 나타나 기준을 충족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한 최종 예비문항 81개는 보육교사 권리 인식을 측정하는데 양호한 문항인 것으로 확인하였다.

2. 문항변별도

보육교사 권리 인식 척도 문항의 변별도를 검증하기 위해 최종 예비문항 81개에 대하여 상위 30%, 하위 30%로 집단을 나눈 뒤, 상·하위 집단 간 평균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test를 검증하였다. 모든 문항에서 상위집단의 평균이 하위집단의 평균 보다 높았고, 이러한 평균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따라서 보육교사 권리 인식 척도의 81개 문항은 변별력 있는 문항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3. 탐색적 요인분석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수집된 자료가 요인분석에 적합한지 알아보기 위해서 Kaiser-Meyer-Olkin(KMO)측도와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을 실시하였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집된 자료에 대한 KMO 값은 .938, Bartlett 값은 9020.294($df = 595$)로 나타났으며, 유의수준은 $p < .001$ 로 확인됨에 따라 수집된 자료가 요인분석에 적합한 자료임이 검증되었다.

표 2. 보육교사 권리 인식 척도의 표본적합도 결과 (N = 404)

| | | |
|-----------------|--------------------|----------|
| KMO 표집 적합도 | .938 | |
| | Approx. Chi-Square | 9020.294 |
| Bartlett 구형성 검정 | df | 595 |
| | Sig. | <.001 |

요인분석 실시 후, 공통성(Communality)이 최소 .40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이영준, 2002)을 바탕으로 공통성이 .40 미만인 18개의 문항을 삭제하였다. 또한 요인부하량(factor loading) 값이 .40 이상일 경우 유의한 변인으로 간주하는 기준(정옥분, 2008)에 따라 15개의 문항을 추가로 삭제하였다. 마지막으로 요인부하량(factor loading)의 차이가 .1을 넘지 않아 교차부하(cross loading)된 문항인 13개의 문항을 삭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최종 요인 수는 5개로 탐색되었으며, 81문항 중 46문항이 삭제되어 35 문항이 추출되었다. 35개 문항으로 전체 변량의 55.86%를 설명하여, 충분한 설명량을 지닌 척도라고 평가할 수 있다. 최종 요인분석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보육교사 권리 인식 척도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 문항 | 1요인 | 2요인 | 3요인 | 4요인 | 5요인 |
|----------|-------|-------|-------|-------|-------|
| d21 | .932 | .017 | .025 | -.008 | -.034 |
| d20 | .843 | .110 | -.012 | -.003 | .017 |
| d22 | .744 | -.051 | .048 | .060 | .158 |
| d23 | .676 | -.022 | .056 | .109 | .108 |
| d24 | .542 | .098 | .177 | -.048 | .049 |
| d26 | .534 | -.010 | .090 | .165 | .153 |
| c7 | .499 | -.021 | .058 | .044 | .349 |
| d27 | .435 | .069 | .011 | .303 | -.003 |
| d25 | .419 | .051 | .052 | .171 | .129 |
| d7 | -.129 | .786 | .070 | .057 | .014 |
| d15 | .083 | .755 | -.133 | -.023 | .061 |
| d16 | .071 | .754 | -.025 | -.088 | .017 |
| d17 | .036 | .719 | .061 | -.111 | .034 |
| d6 | -.016 | .692 | -.014 | .102 | -.075 |
| d8 | -.034 | .691 | -.079 | .057 | .080 |
| d19 | .089 | .642 | -.031 | -.026 | -.038 |
| d10 | .058 | .602 | .109 | -.051 | -.015 |
| d9 | -.027 | .546 | .134 | .086 | .006 |
| b2 | .087 | -.086 | .786 | -.046 | .110 |
| b3 | .026 | -.047 | .737 | .003 | .050 |
| b20 | -.010 | .035 | .620 | -.043 | .004 |
| b16 | -.013 | .094 | .608 | -.010 | .169 |
| b1 | .099 | -.016 | .591 | .008 | .033 |
| b19 | .037 | .062 | .587 | .133 | .001 |
| a4 | .030 | .024 | .571 | .053 | .035 |
| a2 | .009 | .137 | .489 | .030 | -.028 |
| b5 | .117 | .029 | .400 | .200 | -.081 |
| b8 | .186 | .049 | .376 | .099 | .044 |
| f1 | .035 | .019 | .000 | .764 | .063 |
| f4 | .182 | -.003 | .073 | .770 | -.011 |
| f2 | -.040 | .003 | -.071 | .626 | .178 |
| f3 | .028 | -.015 | .097 | .565 | .125 |
| c3 | .021 | .051 | .010 | .053 | .815 |
| c2 | .031 | .004 | .029 | .116 | .669 |
| c4 | .203 | .042 | .108 | .112 | .577 |
| 고유값 | 12.64 | 4.12 | 2.44 | 1.41 | 1.06 |
| 분산(%) | 34.60 | 10.66 | 5.66 | 3.19 | 1.74 |
| 누적설명량(%) | 34.60 | 45.27 | 50.93 | 54.11 | 55.86 |

요인분석에서 나온 문항을 토대로 보육교사 권리 인식 척도의 전체 총점과 요인 점수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요인 간에는 .19~.71의 상관관계를, 요인과 총합 간에는 .65~.86의 높은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표 4. 보육교사 권리 인식 척도 요인의 상관관계

| 요인 | 요인1 | 요인2 | 요인3 | 요인4 | 요인5 | 전체 |
|-----|--------|--------|--------|--------|-----|--------|
| 요인1 | 1 | | | | | .86*** |
| 요인2 | .35*** | 1 | | | | .65*** |
| 요인3 | .65*** | .34*** | 1 | | | .84*** |
| 요인4 | .66*** | .19*** | .47*** | 1 | | .67*** |
| 요인5 | .70*** | .24*** | .50*** | .69*** | 1 | .71*** |

*** $p < .001$.

4. 확인적 요인분석

본 연구에서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추출된 요인구조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델의 적합도 검증을 위해 Chi-Square(χ^2), NC, TLI와 CFI, SRMR, RMSEA를 확인하였다.

초기 확인적 요인분석 실시 결과, 모델이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 수정을 위하여 SMC 값을 기준으로 설명력이 낮은 문항을 삭제하며 수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일반적으로 SMC 값을 기준으로 설명력이 낮은 문항을 제거하면서 적합도 향상을 시도할 수 있으며, 0.4 이하의 값은 잠재변수가 해당 측정변수들의 변량을 잘 설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송지준, 2015). 따라서 SMC값이 0.4 이하인 5개의 문항을 삭제한 후 다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5>와 같이 모든 부합도 지수가 권장 부합도 기준을 모두 만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보육교사 권리 인식 척도 모델의 부합도 지수

| 모델 | NPAR | DF | CMIN | NC | TLI | CFI | SRMR | RMSEA(.06) | |
|----|------|-----|-------|------|-----|-----|------|------------|------|
| | | | | | | | | LO90 | HI90 |
| 지수 | 70 | 395 | 817.8 | 2.07 | .91 | .92 | .048 | .06 | .07 |

측정모델에 대한 모수치를 추정한 결과, 잠재변인인 교사권위-교직원, 교사권위-원아부모, 근로환경, 자율성, 전문성 발달 간의 상관계수는 .23~.80 사이로 나타나 본 측정모델의 잠재변인들 간의 상관계수는 기준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잠재변인에 대한 측정변인의 요인 부하량은 .55~.94 사이로 나타나 잠재변인에 대한 수렴적 타당도(convergent validity) 기준을 만족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측정모델에 대한 모수치를 추정한 결과, 잠재변인인 교사권위-

교직원, 교사권위-원아부모, 근로환경, 자율성, 전문성 발달 간의 상관계수는 .23~.80 사이로 나타났다. 변별타당도(discriminant validity)를 위해 잠재변인들 간의 상관계수는 .85 이하가 되어야 하는데(문수백, 2009), 본 측정모델의 잠재변인들 간의 상관계수는 기준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잠재변인에 대한 측정변인의 요인부하량은 최소 .50 이상이 되어야 측정하고자 하는 잠재변인을 잘 설명할 수 있다고 보는데(문수백, 2009), 본 연구에서 나타난 측정변인의 요인부하량은 .55~.94 사이로 나타나 잠재변인에 대한 수렴적 타당도(convergent validity) 기준을 만족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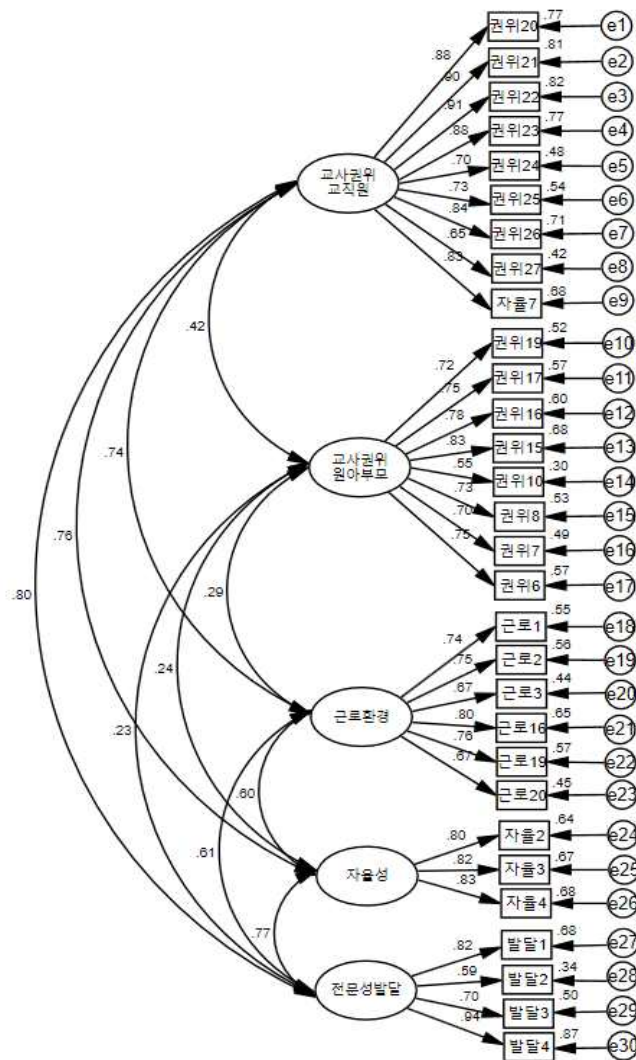


그림 1. 보육교사 권리 인식 척도의 측정모델

5. 공인타당도

본 연구에서 개발된 척도의 공인타당도를 측정하기 위해 삶의 만족도 척도를 선택하여 분석한 결과, 보육교사의 삶의 만족도는 보육교사 권리 인식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 = .24 \sim .48, p < .05, .01$). 이는 보육교사 권리 인식 척도가 충분한 공인타당도를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6. 보육교사 권리 인식 척도의 공인타당도 분석 결과

| 척도 | 교사권위 | | 근로환경 | 자율성 | 전문성 발달 |
|-------|-------|-------|-------|-------|--------|
| | 교직원 | 원아부모 | | | |
| 삶의만족도 | .48** | .24** | .36** | .40** | .39** |

** $p < .01$.

6. 신뢰도

타당도를 확보한 보육교사 권리 인식 척도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구성신뢰도(construct reliability)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교사권위-교직원 요인의 구성신뢰도는 .95, 교사권위-원아부모 요인의 구성신뢰도는 .94, 근로환경 요인의 구성신뢰도는 .87, 자율성 요인의 구성신뢰도는 .85, 전문성 발달 요인의 구성신뢰도는 .87로 나타났고, 개발된 척도의 전체 구성신뢰도는 .99로 나타나 높은 신뢰도를 확보하였음을 확인하였다.

7. 보육교사 권리 인식 척도 최종 개발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최종 개발된 보육교사 권리 인식 척도는 ‘교사권위-교직원’ 요인 9 문항, ‘교사권위-원아부모’ 요인 8문항, ‘근로환경’ 요인 6문항, ‘자율성’ 요인 3문항, ‘전문성 발달’ 요인 4문항으로 총 5요인 30문항으로 개발되었다. 본 척도는 보육교사 권리 인식 자기평가 척도로써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부터 ‘매우 그렇다’의 5점인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다. 최종 개발된 척도의 내용은 <표 7>과 같다.

표 7. 보육교사 권리 인식 척도 최종 문항

| 요인 | 문항 | 문항내용 (역문항*) |
|------------------|----|--|
| 교 직 원 | 1 | 원장은 부모로부터 부당한 요구가 있을 때 교사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
| | 2 | 원장은 부모와 교사의 갈등 상황에서 공정한 판단을 위해 노력한다. |
| | 3 | 원장은 교사의 보육신념을 믿고 존중한다. |
| | 4 | 원장은 교사의 수고를 인정한다. |
| | 5 | 원장은 부모, 동료교사, 원아 앞에서 교사를 탓하기도 한다.* |
| | 6 | 나는 원장과 동료교사로부터 존중받는다고 느낀다. |
| | 7 | 원장은 모든 보육교사에게 존중하는 말과 태도를 보인다. |
| 교 사 권 위 | 8 | 원장은 어린이집 내 CCTV 열람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지킨다. |
| | 9 | 영유아 문제행동 지도 시 원장은 담임교사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한다. |
| | 10 | 부모가 교사에게 명령조로 말하는 것을 목격 또는 경험하였다.* |
| | 11 | 부모는 보육을 핑계로 교사에게 과도한 요구를 한다. (기저귀를 갈지 않고 등원 시키기, 원아 목욕 요구하기)* |
| 원 아 부 모 | 12 | 부모는 자신의 자녀와 일대일 놀이를 요구한다.* |
| | 13 | 나는 부모와의 관계에서 부모가 '갑', 교사가 '을'이라고 생각한다.* |
| | 14 | 부모는 교사에게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언행을 사용한다.* |
| | 15 | 부모는 교사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교사를 의심한다.* |
| | 16 | 원아가 다쳤을 때 부모가 무조건 교사 탓을 하는 것을 목격 또는 경험하였다.* |
| | 17 | 부모가 교사에게 폭언, 폭행하는 것을 목격 또는 경험하였다.* |
| | 18 | 일일 8시간, 주 40시간의 근무 형태가 지켜진다. |
| 근로 환경 | 19 | 일과 중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을 보장받는다. (4시간 근무 시 30분, 8시간 근무 시 1시간) |
| | 20 | 영유아와 분리된 공간에서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
| | 21 | 초과 근무에 대해 수당을 받는다. |
| | 22 | 과도한 서류작업, 행사준비 등으로 보육활동 준비시간을 보장받기 어렵다.* |
| | 23 | 퇴근 후 집에 가서 또는 어린이집에 남아서 업무를 해야 한다.(일주일에 두 번 이상)* |
| 자율성 | 24 | 영유아의 특성에 적합한 보육내용, 교수방법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
| | 25 | 영유아의 특성에 적합한 교수자료, 교구, 도서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
| | 26 | 원장은 교사가 원아에게 제공하고 싶은 교구 혹은 교수자료를 원활하게 지원한다. |
| 전문성 발달 | 27 | 내가 근무하는 어린이집에서는 교사를 위한 다양한 연수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
| | 28 | 정기적으로 보수교육, 승급교육을 받는다. |
| | 29 | 보육교사 권리에 대한 교육을 받는다. |
| | 30 | 원장은 전문가 및 총책임자로서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다양하게 지원한다.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보육교사 권리 인식 척도를 개발 및 타당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하여 보육교사의 권리와 관련된 문헌 분석 및 개별면담을 통해 하위요인 및 문항을 구성하였고, 내용 타당도 검증 및 예비조사를 통하여 여러 차례 문항수정 과정을 거쳐 최종 예비문항에 대한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타당화 검증과정을 거쳐 보육교사 권리 인식을 측정할 수 있는 자기보고식 측정 도구를 개발하였다.

본 연구의 과정 및 결과를 연구문제를 기준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육교사 권리 인식 척도는 ‘교사권위-교직원’, ‘교사권위-원아부모’, ‘근로환경’, ‘자율성’, ‘전문성 발달’의 5개 요인 총 30문항으로 개발되었다. 먼저 ‘교사권위-교직원’은 교사가 원장 또는 동료교사로부터 전문성을 인정받고 교사권위를 존중받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내용으로, 모든 문항이 원장으로부터의 신뢰 및 지지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이는 보육교사가 어린이집 총책임자인 원장으로부터 존중받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교사권위-원아부모’는 교사가 부모로부터 받는 과도한 요구, 감정노동, 교사에 대한 부모의 존중과 신뢰를 알아보는 내용으로, 모든 문항들이 부모로부터 교사권위를 존중받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는 어린이집 내에서 부모로부터 부당한 대우 및 폭력을 경험하는 보육교사가 많다는 한국보육진흥원(2020)의 연구결과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감정노동자보호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여전히 보육교사가 부모에 대한 감정노동을 많이 경험하고 있는 현재 보육현장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초기 구성요인인 ‘교사권위’ 요인은 대상을 구분하지 않고, 보육교사로서 존경과 신뢰를 바탕으로 교사의 전문적인 능력을 존중받을 권리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통계검증 과정에서 교사권위를 존중하는 대상에 따라 서로 다른 요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나타나 두 개의 하위요인(‘교직원’, ‘원아부모’)으로 선정되었다. 이는 보육교사가 교사로서의 권위를 존중받는다든가 사실 자체에 대한 중요성보다 누가 교사권위를 존중해주느냐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는 것으로, 교직원 및 원아부모로부터 느끼는 교사권위 존중이 서로 다른 차별성을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 어린이집 내에서 함께 생활하는 교직원은 비록 업무를 통해 만난 관계이지만 보육교사의 상황을 가장 잘 이해하는 친밀한 관계로, 서로의 업무를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며 사적인 관계로 발전하기도 한다(고희선, 2021). 반면, 원아부모와 보육교사의 관계는 영유아를 매개로 이루어지는 간접적인 관계라는 점에서 두 대상에 대한 보육교사의 인식이 다른 것으로 추측된다.

‘근로환경’은 근로계약, 휴게시간, 업무부담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된다. 휴게시간 사용 및 과도한 업무량 등이 문항에 포함된 것은 보육교사의 실질적인 휴게시간 사용이 어렵고 그 이유는 과도한 업무량 때문이라는 선행연구 결과(권수빈, 2019; 이현옥, 윤혜주, 2021)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자율성’은 교사의 자율적 보육과정 운영과 교재교구 지원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된다. 이는 본 척도가 2019 개정 누리과정 관련 자료에서 확인한 보육교사의 자율성 보장에 대한 내용을 잘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문성 발달’은 교사가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받고 전문성 향상을 위해 지원받는 지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며, 2022 어린이집 평가매뉴얼에서 고찰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척도의 초기 구성요인으로 선정한 ‘기본생활’과 ‘신분 및 사생활’의 경우, 보육교사 권리 인식 척도의 최종 문항에 포함되지 않았다. ‘기본생활’은 보육교사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권리에 대한 내용이나, 어린이집 내 보육교사의 기본적 복지에 대한 평가와 감독이 강화됨으로써 상대적으로 타 영역의 문항에 비해 중요도가 낮게 인식된 것으로 추측된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보육교사의 휴게시간 사용 중 발생할 수 있는 보육 공백을 막기 위해 보조교사 6000명을 추가로 채용하여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유해미 등, 2018. 11). 보조교사 추가 채용은 보육교사의 휴게시간 사용뿐만 아니라 보육의 기초적인 업무를 나눌 수 있으므로, 식사시간 보장과 화장실 출입 등 기본적 복지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신분 및 사생활’의 경우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보수교육에서 아동 인권에 대한 교육은 강화되고 있는 반면,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자신의 신분을 보호하기 위한 노동권, 인권에 대한 교육이 미흡하여 나타난 결과로 추측된다. 또한 2015년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가 법제화된 후 보육교사의 사생활이 교사 권리와 관련된 주요 이슈로 부상하였으나, 이미 보육현장에 적용된 지 오랜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동안 차츰 보육현장의 이해와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원장은 어린이집 내 CCTV 열람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지킨다’는 문항이 최종 문항에 반영된 것은 CCTV가 개인의 사생활 노출과 교사 인권에 대한 논란의 여지는 있으나 일부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CCTV 설치가 필요함을 공감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부모의 무분별한 CCTV 열람 요청은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구자연과 정유나(2020)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와 비슷하게 교사 사생활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부분도 개인정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면서 보육현장에서 개인정보를 노출하지 않는 분위기로 변화함에 따라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에 의하면 과반수 이상의 보육교사가 자신의 개인 연락처를 공유하지 않는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보육교사 권리 인식 척도는 보육교사를 둘러싼 인간관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다. 기존에 사용되어 온 보육교사 권리준중 척도(이강재, 이유미, 2020)의 경우 근로 환경권, 보육과정 운영 자율권, 어린이집 운영 참여권, 신분보장권이 구성요인으로 도출되었고, 교직원 및 원아부모와 보육교사의 관계가 문항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많은 보육교사들이 원장 및 동료교사 또는 원아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고충을 토로하고 있고, 그들로부터 권리 침해를 당한다는 연구 결과(김연 등, 2012; 양미선 등, 2021. 12)를 볼 때 보육교사를 둘러싼 인간관계에 대한 권리적 측면의 고찰이 필요하였고 이것이 척도에 반영된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보육교사 권리 존중 척도’의 한계점으로 지적된 보육교사 휴게시간 사용과 2019 개정 누리과정 및 4차 표준보육과정 시행 후 보육교사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변화된 보육현장의 모습이 반영되어 그 차별성이 드러났다.

둘째, 1차 본조사를 통해 수집된 총 404개의 유효 데이터를 확보하여 문항양호도 검증 및 문항 변별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모든 문항의 왜도 및 첨도 값이 정규 분포의 조건을 만족하

였고, 문항-총점 간의 상관계수가 .20 이상으로 나타나 기준을 충족하였다. 이는 최종 예비문항 81개가 보육교사 권리 인식 측정을 위한 양호한 문항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또한 모든 문항에서 상위 30% 집단의 평균이 하위 30% 집단의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평균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이 검증되었다. 따라서 모든 문항이 보육교사 권리 인식의 정도를 변별력 있게 설명할 수 있는 적절한 문항임이 확인되었다.

셋째, 개발된 보육교사 권리 인식 척도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1차 본조사를 통해 수집된 404개의 유효 데이터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5요인 35문항을 확보하였으며, 2차 본조사를 통해 수집된 234개의 유효 데이터를 통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모델적합도를 검증한 결과, 최종 5요인 30문항을 확보하였다. 측정모델에 대한 모수치를 추정한 결과, 하위요인 간 상관계수는 .23~.80 사이로 나타나 변별타당도 기준을 충족하였으며, 측정변인의 요인부하량은 .55~.94 사이로 나타나 잠재변인에 대한 수렴적 타당도가 확보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개발된 보육교사 권리 인식 척도가 타당한 것임을 알 수 있으며, 각 하위요인들이 보육교사 권리 인식이라는 하나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지만 각 하위요인들이 서로 동질성을 지니면서도 고유한 특성을 측정하는 요인임이 검증되었다.

넷째, 개발된 측정도구가 실제 현상에 적용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공인타당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삶의 만족도를 보육교사 권리 인식 관련 변인으로 설정하여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보육교사의 삶의 만족도는 보육교사 권리 인식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육교사 권리 인식이 행복감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김선희(2021)의 연구결과와 권익침해를 경험하지 않은 보육교사가 권익침해를 경험한 보육교사보다 행복감과 만족감이 높다는 한국보육진흥원(2020)의 연구를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또한 비슷한 맥락으로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는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행복감 사이에 유의한 관련성이 있다는 최정화와 김정화(2021)의 연구와도 맥을 같이 한다. 이를 통해 보육교사 권리 인식이 삶의 만족도와 관련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섯째, 개발된 보육교사 권리 인식 척도에 대하여 Raykov(2001)이 제안한 CFA 기반 구성신뢰도는 .85~.95로 나타나, 각 하위요인들이 서로 동질성을 가지면서도 독립적인 특성을 가진다는 기준을 충족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된 보육교사 권리 인식 척도는 신뢰로운 척도임이 검증되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개발한 보육교사 권리 인식 척도는 신뢰도 및 타당성이 검증되었고,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측정도구임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척도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개발된 보육교사 권리 인식 척도는 보육교사 권리 척도의 한계점으로 제기되는 휴게시간 제공 의무화, 감정노동자보호법 시행 및 2019 개정 누리과정 시행 후 변화된 보육현장의 모습을 충분히 반영하였다. 둘째, 보육교사 권리 인식에 대한 구성요인이 구체화되었다. 본 연구는 이론적, 실증적 문헌을 충분히 검토하여 문항을 구성하고, 다양한 통계분석 과정을 통하여 요인 및 문항을 확보하였으므로, 객관성 있는 새로운 분류체계를 나타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 개발된 보육교사 권리 인식 척도는 보육교사의 권리 실현을 위한 다양한 사회적 정책과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결과에 따른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개발된 척도의 타당도 및 신뢰도 검증을 위해 공인타당도와 구성신뢰도를 확인하였다. 후속 연구에서 다양한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 과정을 거친다면 척도의 안정성이 보다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보육교사 권리 인식 척도 개발 및 타당화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개발된 척도의 적용을 검증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후속연구에서 다양한 변인들과 보육교사 권리 인식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강혜경, 문혁준 (2021). 사회적 자본의 관점에서 본 어린이집 교사의 효능감 영향요인.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5), 609-626. <https://doi.org/10.22251/jlcci.2021.21.5.609>
- 고희선 (2021). 보육교사의 사회적 지지와 인간관계가 조직건강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11), 575-591. <https://doi.org/10.22251/jlcci.2021.21.11.575>
- 교육부, 보건복지부 (2019a). 2019 개정 누리과정 놀이실행자료집. 교육부, 보건복지부.
- 교육부, 보건복지부 (2019b). 2019 개정 누리과정 해설서. 교육부, 보건복지부.
- 구은미, 정혜영 (2016). 보육교사와 유치원교사의 교사권리에 대한 개념도 분석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 96, 1-27.
- 구자연, 정유나 (2020).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대한 개선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https://repo.kicce.re.kr/handle/2019.oak/5058>에서 2023년 11월 30일 인출
- 권수빈 (2019). 보육교사의 휴게시간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미정, 임예슬 (2019). 경기도 보육교사 권리 보호 방안(정책보고서 2019-13).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https://www.gwff.kr/base/board/read?boardManagementNo=1&boardNo=538&page=13&searchCategory=&searchType=&searchWord=&menuLevel=3&menuNo=26>에서 2023년 11월 30일 인출
- 김보현, 박미경, 최양미, 이홍재 (2020). 보육교사 발달단계에 따른 교권 침해 경험 및 대응 요구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5), 653-674. <http://dx.doi.org/10.22251/jlcci.2020.20.5.65>
- 김선희 (2021). 보육교사의 권리존중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긍정심리자본과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 칼빈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연, 방소연, 유재두 (2012). 보육교사 인권상황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https://library.humanrights.go.kr/search/tot/result?st=KWRD&si=TOTAL&q=%EB%B3%B4%EC%9C%A1%EA%B5%90%EC%82%AC+%EC%9D%B8%EA%B6%8C&folder_id=null에서 2023년 11월 30일 인출
- 문수백 (2009). 구조방정식모델링의 이해와 적용. 학지사.
- 손정은 (2022). 보육교사의 권리인식이 영유아권리존중 실행에 미치는 영향: 심리적 소진의 매개효과.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송지준 (2015). 논문작성에 필요한 SPSS/AMOS 통계분석방법. 21세기사.
- 양미선, 이윤진, 김동훈, 조숙인, 김근진, 구자연 등 (2021. 12).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 어린이집

- 조사 보고 - . 보건복지부, 육아정책연구소. <https://repo.kicce.re.kr/handle/2019.oak/5300>에서 2023년 11월 30일 인출
- 유해미, 강은진, 권미경, 박진아, 김동훈, 김근진 등 (2018. 11).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 어린이집 조사 보고 -. 보건복지부, 육아정책연구소. <https://repo.kicce.re.kr/handle/2019.oak/1590>에서 2023년 11월 30일 인출
- 윤재희, 이효정, 김성숙, 김영희, 정서연 (2015). 보육교직원의 인권 역량 향상을 위한 기초연구 및 교재 개발. 국가인권위원회.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currentpage=2&menuid=001003001003&pagesize=10&searchcategory=%EA%B8%B0%ED%83%80%EB%B0%9C%EA%B0%84%EC%9E%90%EB%A3%8C&boardtypeid=17&boardid=7601612>에서 2023년 11월 30일 인출
- 이강재, 이유미 (2020). 보육교사 권리존중 척도 개발 및 타당화.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16), 1275-1298. <http://dx.doi.org/10.22251/jlcci.2020.20.16.127>
- 이서영, 양성은 (2018). 보육교사 권리에 대한 경험적 인식 연구. *한국보육학회지*, 18(4), 39-50. <http://dx.doi.org/10.21213/kjcec.2018.18.4.39>
- 이성혜, 김연하 (2013). 어린이집의 교육풍토, 보육교사의 전문성 인식과 보육과정 운영의 질. *한국보육지원학회지*, 9(3), 75-93.
- 이영준 (2002). *요인분석의 이해*. 석정.
- 이현옥, 윤혜주 (2021). 보육교사의 휴게시간 운영 실태와 보육현장의 요구 분석. *영유아교육·보육연구*, 14(1), 5-29.
- 임승렬 (2007). 교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유치원 교원의 인식 수준에 관한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12(3), 1-18.
- 장경화, 임선아 (2022). 보육교사의 교사권리 인식에 대한 개념도 분석.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8(1), 51-70. <https://doi:10.14698/jkce.2022.18.01.05>
- 정계숙, 최은아 (2019). 어린이집 CCTV에 대한 보육교사의 인식. *한국영유아보육학*, 116, 91-122.
- 정선영, 조안나 (2019). 보육교사-학부모 간 의사소통 어려움과 직무만족도가 보육교사의 정서노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5(5), 87-111. <https://doi.org/10.14698/jkce.2019.15.05.087>
- 정옥분 (2008). *아동학 연구방법론*. 학지사.
- 직장갑질119, 공공상생연대기금, 보육교사119 (2020. 12). 2020 보육교사 설문조사 보고서. <https://solidarityfund.or.kr/reference/arch/?mod=document&uid=203>에서 2023년 11월 30일 인출
- 진보네트워킹센터 (2015. 2). 어린이집 보육실내 CCTV 의무화에 대한 의견. <https://act.jinbo.net/wp/wp-content/uploads/2015/02/20150209CCTV>에서 2022년 4월 19일 인출
- 최양미, 박미경, 이홍재 (2017). 계층분석방법(AHP)을 활용한 보육교사 교권의 상대적 중요도 분석: 실무 및 학계 전문가 비교. *한국보육학회지*, 17(2), 25-44. <http://dx.doi.org/10.21213/kjcec.2017.17.2.25>
- 최정화, 김정화 (2021). 아동권리를 존중하는 어머니의 양육 행동이 아동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아동과 권리*, 25(4), 511-530. <http://doi.org/10.21459/kccr.2021.25.4.511>

- 한국보육진흥원 (2020). **보육교직원 권리보호 및 지원방안 모색**. [https://www.kcpi.or.kr/upload/board/634581607045440963_%ED%95%9C%EA%B5%AD%EB%B3%B4%EC%9C%A1%EC%A7%84%ED%9D%A5%EC%9B%90%20-%20%EB%B3%B4%EC%9C%A1%EA%B5%90%EC%A7%81%EC%9B%90%20%EA%B6%8C%EB%A6%AC%EB%B3%B4%ED%98%B8%20%EB%B0%8F%20%EC%A7%80%EC%9B%90%EB%B0%A9%EC%95%88%20%EB%AA%A8%EC%83%89\(%EC%9E%90%EB%A3%8C%EC%A7%91\).pdf](https://www.kcpi.or.kr/upload/board/634581607045440963_%ED%95%9C%EA%B5%AD%EB%B3%B4%EC%9C%A1%EC%A7%84%ED%9D%A5%EC%9B%90%20-%20%EB%B3%B4%EC%9C%A1%EA%B5%90%EC%A7%81%EC%9B%90%20%EA%B6%8C%EB%A6%AC%EB%B3%B4%ED%98%B8%20%EB%B0%8F%20%EC%A7%80%EC%9B%90%EB%B0%A9%EC%95%88%20%EB%AA%A8%EC%83%89(%EC%9E%90%EB%A3%8C%EC%A7%91).pdf)에서 2023년 11월 30일 인출
- 한국보육진흥원 (2022. 2). **2022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어린이집용)**. <https://www.kcpi.or.kr/kcpi/cyberpr/childcarecentaccred1/detail.do?colContentsSeq=63858>에서 2022년 10월 18일 인출
- 홍세희 (2015). **구조방정식 모형의 기초 이론과 적용**. 에스엔엠리서치그룹.
- Diener, E., Emmons, R. A., Larsen, F. J., & Griffin, S. (1985).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9(1), 71-75. https://doi.org/10.1207/s15327752jpa4901_13
- Nunnally, J. C., & Bernstein, I. H. (1994). *Psychometric theory* (3rd ed.). McGraw-Hill.
- Raykov, T. (2001). Estimation of congeneric scale reliability using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with nonlinear constraints. *British Journal of Mathematical and Statistical Psychology*, 54(2), 315-325. <https://doi.org/10.1348/0007110011159582>

논문투고 : 23.06.15.

수정원고접수 : 23.10.12.

최종게재결정 : 23.11.14.